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6-163호	도로명주소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26-165호	일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3
고양시 고시 제2026-166호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	5
고양시 고시 제2026-167호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7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6-1455호	고양시 소하천의 지정(변경안) 및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안) 등 주민 공람 공고	8
고양시 공고 제2026-146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일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도로(일산테크노 산단 진입도로)]	10
고양시 공고 제2026-146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재공고	12
고양시 공고 제2026-1471호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외 1개소]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20
고양시 공고 제2026-1481호	창릉천(강매석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재난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4

고양시 고시 제2026 - 16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93-55 등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6.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81번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93-55	2026-06-12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12-30번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31-15	2026-06-12	2010-01-26	행주산성로 시점에서 144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76-21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146번안길 84-45	2026-06-12	2021-03-15	성석로146번길에서 안쪽으로 위치한 도로구간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959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202-8	2026-06-12	2011-07-20	은곡-마곡마을의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1번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232-8	2026-06-12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95-40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4번길 50	2026-06-12	2010-01-26	덕산로 시점에서 104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256-14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2번길 27	2026-06-12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12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86-28번지 외 2필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83	2026-06-12	2009-09-11	고양 팔현 중 성현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6번지 외 1필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터1로 16-5	2026-06-12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14-5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95번길 57	2026-06-12	2010-01-26	햇살로 시점에서 95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4번길 50	2026-06-12	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멸실	가좌동	

고양시 고시 제2026-165호

일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A3구역 “일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한 사항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6. 12.

고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일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91-8번지 일원(미래타운 A3구역)

나. 면 적 : 24,629.9㎡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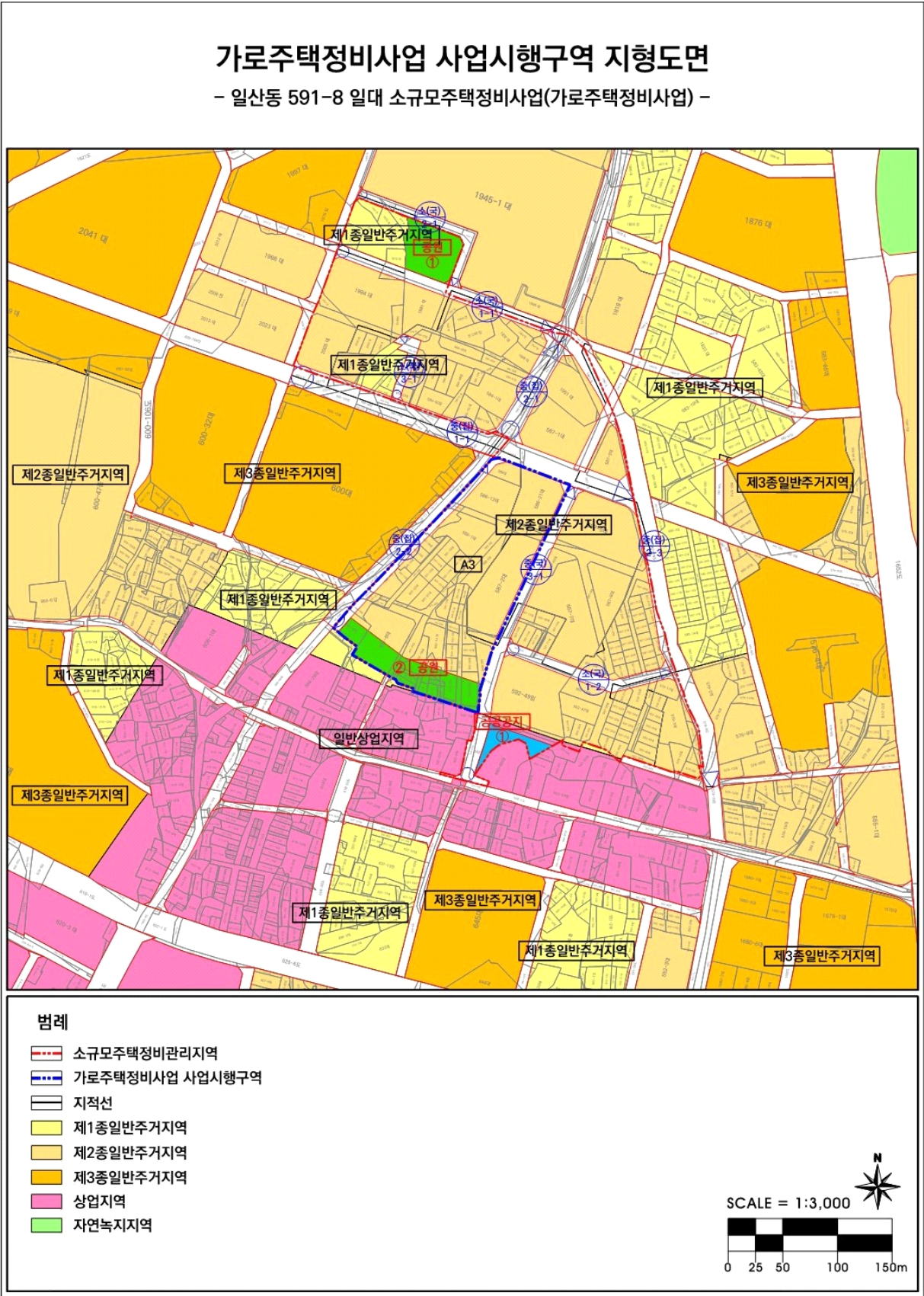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일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6번길 2, 3층(일산동 589-9번지)

5. 지형도면



고양시 고시 제2026-166호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우리 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당1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경미한)변경 신청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인가)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처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2.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시행자 :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사업의 명칭(종류) : 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원당1구역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	120,385.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정종근, ☎031-968-2125)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3번길 60 2층(주교동 568-13)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초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5. 09. 11.)로부터 127개월(2026. 04. 10.)

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5. 09. 11.)로부터 148개월(2028. 01. 31.)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5. 09. 11.(금)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사업시행계획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 층 수 : 지하3층/지상 35층(아파트 17개동)

구분	면적		위치	주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획지	기정	81,31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 일원	공동주택/부대시설	351,913.1209㎡	14.9083%	279.43%	35층
	변경				351,966.9958㎡	14.9371%	279.47%	
정비 기반 시설	39,070.7㎡			도 로:23,480.1㎡ 공 원:9,788.2㎡ 공공청사:3,283.4㎡ 주 차 장:837.7㎡ 공공공지:1,681.3㎡	-	-	-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10.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고양시 고시 제2026-167호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안의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고양시장 (인)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지목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	333,809
답	218,510
과수원	265,819
목장용지	381,094
임야	100,984
광천지	-
염전	-
대	1,935,432
공장용지	713,206
학교용지	1,714,875
주차장	1,526,265
주유소용지	2,008,502
창고용지	778,387
도로	558,593

지목	평균 개별공시지가
철도용지	587,192
제방	104,701
하천	132,775
구거	130,437
유지	479,277
양어장	525,895
수도용지	414,486
공원	623,139
체육용지	400,165
유원지	774,267
종교용지	1,519,224
사적지	1,168,785
묘지	73,774
잡종지	994,432

부 칙

1. 위 지목별 평균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활용하고자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무시하고 지목별로 면적가중평균한 지가로서 실제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평균지가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소하천의 지정(변경안) 및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안) 등 주민 공람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조의3,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3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고시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안)을 공람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2.

고 양 시 장

1. 공람대상 : 고양시 관내 소하천 3개소에 대한 소하천의 지정(변경안) 및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안)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안)

가. 소하천의 지정(변경안)

수계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m)	소하천 지정(변경)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창릉천	화현천	화전동 730-5번지	현천동 536-2번지	1,914 (기존 1,965)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조성으로 일부구간 계획선형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새말천	현천동 773-8번지	현천동 475-8번지	789 (기존 752)	
	난점천	현천동 386-1번지	현천동 536-2번지	852 (기존 873)	

나.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안)

수계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 사유
창릉천	화현천	화전동 730-5번지(전) 등	61,454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조성으로 일부구간 계획선형 변경에 따른 소하천구역 변경
	새말천	현천동 773-8번지(도) 등	10,735	
	난점천	현천동 386-1번지(답) 등	16,461	

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안)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년 6월 12일(금) ~ 2026년 6월 26일(금) ※ 15일간

나. 공람시간 : 09:00 ~ 18:00

다. 공람장소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충헌빌딩 3층 생태하천과)

라. 관련도서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이내(2026년 6월 26일까지)

나. 제출장소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다. 제출방법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 제출 또는
우편접수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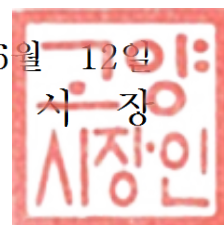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031-8075-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6-146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일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도로(일산테크노 산단 진입도로)]

1.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도로(일산테크노 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2일
고양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가	29.4	보조 간선도로	97.0	대로2-23 (대화동 1396-426)	대로3-54 (대화동 1396-213)	일반 도로	-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대로3-가 호선	· 신설 L=97.0m B=29.4m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도로(일산테크노 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3.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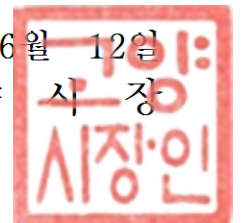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12.(금) ~ 2026. 6. 26.(금) (※공고일부터 15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일산서구청 건축과,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 도서: “계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 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장소에서 공람 내용의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을 금지합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6-146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재공고

1.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73-4번지의 「일산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일산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2일
고양시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91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일산동구 중산동 1669-4번지 일원	233,014.2	고양시 고시 제2010-246호 (2010.11.2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 내용	변경 사유
91	- 구역명 변경 - 기정: 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구역명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71	노외주차장	일산서구 일산동 1673-4번지, 1673-5번지	663.2	증) 470.9	1,134.1	고고제31호 01-04-09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변경 사유
71	노외 주차장	노외주차장 확장 기정) 663.2㎡ 변경) 1,134.1㎡(증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26	공공공지	일산서구 일산동 1673-4번지	470.9	감) 470.9	-	고고제31호 01-04-09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변경 사유
26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기정) 470.9㎡ 변경) 0㎡ (감 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주차장용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m²)		
					기정	변경	
C1	1,770.8	2,241.7	1	일산동 1681-3번지	201.40		—
C2			2	중산동 1667번지	357.20		—
C3			3	일산동 1673-5번지	663.20	1,134.10	노외주차장 확장
C4			4	중산동 1659번지	549.00		

■ 주차장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 내용	변경 사유
C3	노외주차장 확장 기정) 663.2㎡ 변경) 1,134.1㎡ (증 470.9㎡)	주차수요 증가로 기존 주차면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폐쇄된 인접 게이트볼장(공공공지26)을 일산제1공영주차장(주차장71)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C1 C2 C3 C4	도면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C1, C3	50% 이하
				C2, C4	60% 이하
		용적률		C1, C3	250% 이하
				C2, C4	23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분	기정	변경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중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일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제1종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15. “최고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6. “최저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1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6.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구분	기정	변경
	- 제18조 (건폐율·용적률·층수)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의 위치가 정하여진 곳에는 지어지는 지상부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지정된 아파트 유형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 스카이라인, 미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다.	- 제18조 (건폐율·용적률·층수)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의 위치가 정하여진 곳에는 지어지는 지상부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지정된 아파트 유형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 스카이라인, 미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다.
	- 제24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동선이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걸쳐 연결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단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에서 내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이 되는 구조로 한다.	- 제24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동선이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걸쳐 연결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단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에서 내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이 되는 구조로 한다.
	- 제29조 (부대복리시설)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놀이, 휴게, 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로 지정된 곳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어린이 놀이터 1개소 2. 주민운동시설 3. 노인정 4. 휴게시설	- 제29조 (부대복리시설)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놀이, 휴게, 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로 지정된 곳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어린이 놀이터 1개소 2. 주민운동시설 3. 노인정 4. 휴게시설
	- 제30조 (건물의 배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방향이 지정된 위치에는 지시된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30조 (건물의 배치)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방향이 지정된 위치에는 지시된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제39조 (대지의 분할)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 합병후 원획지 규모로 환원은 허용한다.	- 제39조 (대지의 분할)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 합병후 원획지 규모로 환원은 허용한다.

구분	기정	변경
	- 제43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사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제43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제52조 (대지의 분할)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다.	- 제52조 (대지의 분할)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대지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다.
	- 제77조 (건축허가 및 심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 및 심의до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도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표기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해당 규제, 유도, 권장사항의 명기 다. 건축물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 계획 라.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색채, 마감재료 등)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 제77조 (건축허가 및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 및 심의до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도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표기 및 필요한 경우 관련부분 상세 나.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해당 규제, 유도, 권장사항의 명기 다. 건축물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 계획 라.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색채, 마감재료 등) 마.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구분	기정	변경
	- 제7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지정 및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7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지정 및 변경,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80조 (지침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제80조 (지침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 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조 (목적) 기정)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 제2조 (지침의 적용) 기정)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4·18·24·29·30·39·43·52·77·79·80조 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명칭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 하고자 함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기정) “고양시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일산동 지구단위계획”	

3. 기타사항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12.(금) ~ 2026. 6. 26.(금) (※공고일부터 15일간)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일산동구청 건축과, 일산서구청
건축과, 일산2동·중산1동·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 도서: “계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 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공람 내용의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을 금지합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6 - 1471호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외 1개소]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 1. 고양시 고시 제2025-248(2025. 8. 1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09-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내용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	25~32	보조간선 도로	772	대로3-15 탄현동 1513	대로2-1 덕이동 304-6	일반 도로	-	경고 제381호 (98.09.15)	일현로
변경	대로	3	17	25~32	보조간선 도로	772 (17)	대로3-15 탄현동 1513	대로2-1 덕이동 304-6	일반 도로	-	경고 제381호 (98.09.15)	일현로

※ ()는 구역내 도로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7호선	대로 3-17호선	○ 일부구간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전체 폭원 : 25~32m (변경없음) • 금회 구간 폭원 : 25m → 28m • 면적 : 증) 14m ²	○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차선을 개선하고자 일부구간 도로폭원 및 선형 일부 변경

2) 공간시설 : 변경 없음

2.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09-5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대로2-1호선 외 1개소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마그나피에프브이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16층(역삼동)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5-50	주간선 도로	8,770 (73)	대로2-6 화정동 428-12	고양시 북측경계 덕이동 319-7	일반 도로	경고제504호 (91.12.31.)	경의로 (A=548m ²)
변경 없음	대로	2	1	35-50	주간선 도로	8,770 (73)	대로2-6 화정동 428-12	고양시 북측경계 덕이동 319-7	일반 도로	경고제504호 (91.12.31.)	경의로 (A=548m ²)
기정	대로	3	17	25-32	보조간 선도로	772 (105)	대로3-15 탄현동 1513	대로2-1 덕이동 304-6	일반 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일현로 (A=750m ²)
변경	대로	3	17	25-32	보조간 선도로	772 (105)	대로3-15 탄현동 1513	대로2-1 덕이동 304-6	일반 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일현로 (A=753m ²)

※ ()는 구역내 금회시행 도로 연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3.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대로2-1호선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일산서구 덕이동	304-39	잡	1,623	37	공	고양시			
2	"	309-56	임	3,654	9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3	"	309-80	임	1,238	406	공	고양시			
4	"	309-72	답	573	12	공	고양시			
합 계				7,088	548					

- 대로3-17호선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일산서구 덕이동	309-106	임	215.0	108.0	110.0	공	고양시			
2	"	309-83	임	60.0	35.0	35.0	교보자산 신탁(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 교보타워)			
3	"	309-81	임	9,863.0	25.0	25.0	교보자산 신탁(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 교보타워)			
4	"	309-105	임	3.0	3.0	3.0	공	고양시			
5	"	309-104	임	6.0	6.0	6.0	공	고양시			
6	"	304-6	도	3,349.0	573.0	574.0	공	고양시			
합계		6필지		13,496.0	750.0	753.0					

고양시 공고 제2026-1481호

창릉천(강매석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재난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창릉천(강매석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2.

고 양 시 장

- 설치목적 : 창릉천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보안, 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6. 6. 12.(금) ~ 2026. 7. 2.(목) (21일간)
- 설치장소 : 아래 설치 위치(4개소) 참조 (3p)
- 촬영범위 : 주변 15~20M 내외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설치예정일 : 2026년 7-8월 중

□ 공고방법 : 고양시 관보,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7. 2. 까지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통합하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4p)

○ 제출방법 :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 (2026.7.2.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방 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302호(충현빌딩)

- 전자우편 : dckim84@korea.kr

- 팩 스 : 031-8075-4925 (※ 팩스 전송 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통합하천팀 김동찬(☎ 031-8075-2838)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창릉천(강매석교 일원)지방하천 정비사업 CCTV 설치 위치

□ 설치예정 시설물

연 번	행정동	지번 주소	상 세 위 치	카메라 대수	비 고
1	행신2동	덕양구 강매동 652-5	창릉천 하천주차장 내부	1대	신규설치
2		덕양구 강매동 651-6	창릉천 하천주차장 내부	1대	신규설치
3		덕양구 강매동 398-2	강매로 인근	1대	신규설치
4	대덕동	덕양구 현천동 534-2	창릉천(현천펌프장인근)	1대	신규설치

□ 위치도



【의견서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업명	창릉천(강매석교 일원)지방하천 정비사업 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위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내용			
2026년 창릉천 (강매석교 일원)지방하천 정비사업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